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4-154

제출년월일: 2024. 11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, 부설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일부 개정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송 안정화 기여 및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(안 제12조제3항 및 [별표1] 비고 6.)
- 나.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서 '인근'의 범위 확대(안 제19조)
- 다.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[별표]]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

및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4. 10. 10. ~ 10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: 원안 동의
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: 원안의결(2024. 11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1과 같이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.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,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개인택시·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"을 "개인택시, 마을버스, 용달화물,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"로, "정기권요 금"을 "정기권 요금"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"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"를 "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200미터"를 "300미터"로, "300미터"를 "600미터"로 한다.

[별표 1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-1구획당)

구분	노상주차장			노외주차장		
	1회주차 시	월 정기권		1회주차 시	월 정기권	
	5분당	주간	야간	5분당	주간	야간
1급지	500	I	_	400	250,000	100,000
2급지	250	150,000	60,000	250	180,000	60,000
3급지	150	100,000	40,000	200	100,000	40,000
4급지	100	50,000	20,000	150	환승목적주차 시 40,000 기타 50,000	20,000
5급지	50	30,000	20,000	100	30,000	20,000

※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 시 월 정기권 요금

-노상주차장: 월 4만원

-노외주차장: 월 5만원

- 비고 -

- 1.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.
- 2.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- 3.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1급지: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
 - 1) 홍익대학교·서강대학교 주변 지역: 신촌로·대흥로·강변북로· 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
 - 2) 용산·마포지역 : 강변북로·마포대로·충정로·통일로·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
 - 나. 2급지: 주거・상업・공업지역의 주차장(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) 중

상업·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
- 다. 3급지: 1 · 2 · 4 ·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
- 라. 4급지: 지하철환승주차장(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)중 상업·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
마. 5급지

- 1)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
- 2)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
- 3) 1·2·3·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 차장
- 바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.
- 4.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- 5.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·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6. 구청장은 개인택시, 마을버스, 용달화물,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 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.
- 7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

- 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<개정 2020.2.27.>
- 가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 12호·제13호·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 장 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
- 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<신설 2020.2.27.>
- 마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<신설 2021.12.30.>
- 바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 증을 제시한 사람
- 8.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 인할 수 있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

- 을 할인하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 제한다.
- 9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 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- 10.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 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 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
- 11.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- 12.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,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2.30.>
- 13.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, 국세청장 또는 구 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.
- 14. <삭제, 2020. 7. 9.>
- 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총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 <개정 2018.12.27., 2023. 3. 9.>
- 16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선 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·군·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 급한 「투표확인증」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

- 차요금을 2,000원까지 할인한다. 다만,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.
- 17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 <개정 2023.7.13.>
- 17의2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 <신설 2021.12.30.>
- 18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 · 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・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%를 경감한다.
- 19.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- 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(이하 이 호에서 "공공시설"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: 수강 시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 시간 이내 면제 <개정 2022.12.29.>
 - 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: 정기권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
- 21. 공무수행차량,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 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

22. 삭제

- 2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"전기자동차"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- 24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 <신설 2019.3.28.>
- 25.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 - 가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나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신설 2020.4.24.>
- 2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30.>

혀 행

제12조(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등)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- 1. 삭 제
- 2. (생략)
- 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개인택시 ·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 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

개 정 안

----. <u><단서</u> 삭제>

② 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수 있다.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,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 <u>개인택시,</u> 마을버스, 용달화물,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-----

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·야간을 모 두 이용할 경우의 월 <u>정기권요금</u>은 3만원으로 한다.
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
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한다.

[별표 1]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 제1 항관련)

> (생 략) - 비 고 -

- 1.~5. (생략)
 - 6. 구청장은 개인택시·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 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 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 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- 7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7.

정기권 요금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)
000-1-1
<u> 300미터</u> <u>600</u>
미터
[별표 1]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 제1
항관련)
(현행과 같음)
- 비 고 -
1.∼5. (현행과 같음)
6 <u>개인택시, 마을버스,</u>
용달화물, 개별화물의 운송사
업용 자동차
2년
<u></u>

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<개정 2020.2.27.>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 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 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 증을 제시한 경우
-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3호·제15호와 같은 법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같은 법시행령제101조에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사람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

나
국가보훈부 장관이
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
rl
다

법률」제2조에 따른 고엽 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로서 <u>국가보훈</u> 천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 지한 사람

라.~바. (생 략)

- 8. 구청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 인할 수 있다. 다만, 지하철환 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 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 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 되,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.
- 9.~15. (생략)
- 16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<u>「지방</u>

<u>국가보훈부 장관</u>
라.~바. (현행과 같음)
8
<u>제2조</u>
<u>에 따른</u>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
환경친화적 자동차
 9.~15. (현행과 같음)
16 「지방

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 ·군·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「투표확인증」을 3 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,000원까지 할인한다. 다만,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.

- 17. (생략)
- 18. 「5・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・ 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・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 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 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 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 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 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%를 경감 하다.
- 19.~21. (생략)
- 22.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승용

	<u> </u> 교육자지에 관점	한 법듈」제2	<u> 2소</u>
	에		
-			_
-			_
-			_
_			_
-			_
-			_
-			
17.	7. (현행과 같음)		
18.	8. 「5・18민주유공	자예우 및 단	<u> </u>
,	설립에 관한 법률	<u></u>	
-			
-			
-			
_			
_			
_			
-			
_			
19.).~21. (현행과 곱	<u> </u>	
22.	2. <삭제>		

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 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 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. ("승용차공동이용 자 동차"란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-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
- 3. 미첨부 사유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- 4. 작성자 :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안정현 (☎ 3153-9664)